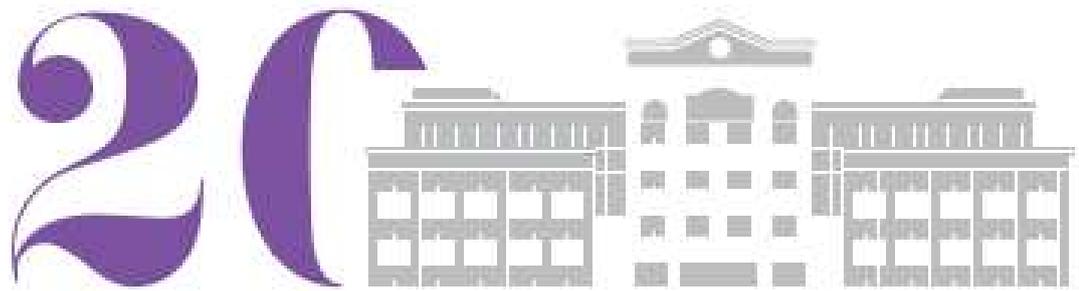




협성대학교

2025학년도 후기 산업안전보건 계약학과 모집요강



HYUPSUNG UNIVERSITY



협성대학교
HYUPSUNG UNIVERSITY



2025학년도 후기 산업안전보건 계약학과 모집요강

◆ 일반대학원 산업안전보건학과 소개

1 교육 목표

- ▶ 화성특례시 관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화성산업진흥원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지원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
- ▶ 산업안전보건관리 수행을 위한 체계적 이론 심화학습 교육과정
- ▶ 산업체 및 학습자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직무 중심 설계
- ▶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역량의 즉시 적용 가능성 제고

2 교육 과정

교과 구분	교과목 (교과목당 3학점 3시간)	
전공 필수	산업안전보건관리	산업재해 감시체계
	논문연구I	논문연구II
	안전보건 실무 프로젝트1	안전보건 실무 프로젝트2
전공 선택	재난안전 및 위험관리특론	산업재해 대응과 산재관리
	심리안전	작업환경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및 제도 분석	작업환경 안전보건 세미나
	기업재난관리론	화학물질 안전보건 세미나
	업무연속성 관리(BCMS)	디지털 전환과 산업안전
	산업안전관리기획	사례 기반 산재분석과 예방전략
	ESG 기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현장중심 안전관리체계 운영론

* 개설 과목은 산업체 및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추후 개편될 수 있음.

3 교육 운영

- ▶ 수업 연한 : 4학기 (학기별 15주)
- ▶ 수업 시간 : 평일 야간 또는 주말 (주 1회 또는 주 2회)
 - * 학습자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 가능함
- ▶ 수업 방법 : 대면, 플립러닝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 ▶ 졸업 요건 : 4학기 24학점 이수,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
 - 학위 청구 논문 제출(6학점) 또는 학점이수대체 프로젝트 보고서(6학점) : 총 30학점
- ▶ 수여 학위 : 졸업 요건 충족 시 공학석사 학위 수여

◆ 모집 안내

1 모집 인원

유형	학위과정	학과명	모집인원	학기/이수학점	개강일
재교육형	석사과정 (공학석사)	산업안전보건학과	20명	4학기/30학점	2025년 9월

2 입학 자격

구분	내용	
공통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신청기업의 업종 및 근로자의 직무가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함	
기업	[화성특례시 관내 소재 기업 중 중소·중견 기업] ① 기업 : 계약학과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인 기업. 단,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관과 비영리 법인은 제외 -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지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 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②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③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참여기업 선발 제한] ①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② 기타 관리기관의 장(화성산업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기본사항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하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포함) ②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및 근로자의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는자 ③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자
	우선선발 기준	① 학사학위(동등 학력) 취득 후 참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서 안전보건 업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정기술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② 기타 관리기관의 장(화성산업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의무사항	재학 기간 2년 + 졸업 후 1년 (총 3년) 참여기업 의무근무 * 매 학기 등록 전 재직 여부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및 보증보험증권) 제출

3 등록금 및 부담금

구분	화성산업진흥원	참여기업 및 학생	계
등록금	3,000,000원(100%)	0원	3,000,000원(100%)

4 전형 방법 및 일정

▶ 전형 방법

구분	전형방법
참여학생	서류심사 + 면접고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고사 실시 (면접고사 반영 비율 100%)

▶ 전형 일정

구분	기간	장소 및 안내사항
참여기업 모집기간	2025.06.30.(월) 부터 2025.07.22.(화) 까지	- 참여기업 (중소·중견기업 산업체) 모집
입학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2025.06.30.(월) 부터 2025.07.22.(화) 17시까지	- 우편접수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현장방문접수 (단, 금/토/일요일 제외) - 보내는 곳 (우)1833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72 일반대학원 교학팀 (웨슬리관 1층 106호)
면접고사	2025.07.26.(토) 14시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고사 대상자 개별 통보 - 협성대학교 웨슬리관 1층 104호 대학원장실
합격자 발표	2025.07.30.(수)	- 합격자 개별 통보
수강신청	2025.08.18.(월) 부터 2025.08.21.(목) 까지	-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신입생 O.T	추후 안내	- 추후 안내
개강	2025.09.01.(화)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료

전형료	입금계좌
50,000원	신한은행 140-0098-599510 (예금주 : 협성대학교)

◆ 유의 사항

1 지원자 유의 사항

- 가. 모집요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나. 모든 입학전형 과정상에서 수신자 부재,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 오류 및 기타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함
- 다.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원서의 허위기재, 서류의 위조·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취소됨
- 라. 필수서류 미제출한 자 및 지원자 자격(서류)심사 결과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됨
- 마. 면접고사 결시자 및 면접고사 결과 수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자 불합격 처리됨
- 바. 재학 중(졸업 전) 자진 퇴사한 자 또는 타 사업장으로 취업 할경우 전체 교육지원금은 환수 조치됨
- 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휴학은 불허됨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여 학생의 근무 및 학업 상황 변동에 따른 처리기준 참조 [별도1]

② 재학기간 중 유의사항

- 가. 재학기간 및 의무근무기간 동안 매 학기 등록 전 재직 여부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나. 합격자는 해당 학기를 시작일로 하여 의무 근무기간 종료일까지 교육지원금을 담보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매 학기 제출하여야 함

③ 졸업 후 유의사항

- 가. 졸업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함
- 나. 그 기간 내에 기업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한 경우 지원한 전체 교육지원금은 환수 조치됨

◆ 제출 서류

제출서류	첨부서류	부수	양식
계약학과 입학원서	인터넷 출력 후 제출	1부	[별첨1]
최종 학력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참여기업 신청서(재교육형)	① 사업자등록증 ② 중소기업 확인서 (https://sminfo.mss.go.kr) ③ 중견기업 확인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중견기업만 해당) ④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https://www.nhis.or.kr)	각 1부	[별첨2]
입학추천서	① 재직증명서 (안전보건업무 경력 해당 유무 포함) ②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https://www.4insure.or.kr) ③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④ 소정기술분야의 자격증 사본 (우선선발 기준 해당자)	각 1부	[별첨3]
3자 계약서 (간인 필수)	최종 선발 완료 후 3자 계약 체결	3부	[별첨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3자 계약 체결 시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여부 체크 - 동의자 성명 기입, 서명 후 제출	1부	[별첨5]
참여기업 국세 납입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발급 후 제출	1부	
참여기업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발급 후 제출	1부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 후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 문의처

협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안전보건학과 (계약학과)

- ▶ 전화 031-299-0650
- ▶ e-mail cny@uhs.ac.kr
- ▶ 주소 (1833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72 일반대학원 교학팀 (웨슬리관 1층 106호)

「산업안전보건 계약학과」 참여기업 신청서

기 업 명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설 립 일 자	년 월 일	대표자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인등록 번 호	
소 재 지			
주 요 생 산 품		표준산업 분 류	
자 본 금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4 대 보 험 가 입 여 부	<input type="checkbox"/> 가입, <input type="checkbox"/> 미가입	상시 근로자 수	명
업 무 담 당 자	부서명		연락처
	성 명		FAX
참 여 회 망 산업안전보건 관 계 자	성 명		지원학과
	성 명		지원학과

「산업안전보건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3조 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만 해당)
 3. 중견기업 확인서 및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각1부(중견기업만 해당)
 4.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1부
 5.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1부

2025년 7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협성대학교 총장 귀하

「산업안전보건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성 명		생 년 월 일	
지 원 학 과		연 락 처	
근 무 부 서		재 직 기 간 (개 월)	년 월 일 ~ 현재 ()
직 위		담 당 업 무	

<추천사유>

교육과정과 추천대상자의 직무 간 상호 연관성(현재 또는 향후)

학위과정 수료이후 추천대상자에 대해 기대하는 효과

기타 위 사람을 추천한 특별한 사유

위 사람을 2025학년도 협성대학교 「산업안전보건 계약학과」 입학희망자로 추천합니다.

- ※ 첨부 1. 재직증명서 1부(안전보건업무 경력 해당유무 포함된 것)
 2.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1부
 3. 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1부
 4. 소정기술분야의 자격증 사본 1부.

대표자 : (인)

협성대학교 총장 귀하

「산업안전 계약학과」 3자 계약서

(재)화성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관대학의 장” 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이 「산업안전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침 준수)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산업안전 계약학과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금 납부)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은” 아래의 등록금 부담금액을 아래 부담비율에 따라 상호 협의 후 약정하여야 하며, 협의한 금액에 대해서는 “주관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	교육지원금 (부담비율: 100%)	참여기업 부담금 (부담비율: 0%)	참여학생 부담금 (부담비율: 0%)
3,000,000원	3,000,000원	0원	0원

제4조(의무근무) “참여학생”은 기본적으로 졸업(학교별 학칙에 의거하여 마지막 논문지도 학기를 포함한 4 학기 학위과정 이수학점 이수 시점의 수료 또는 학위취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로부터 1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참여학생”의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 기간: 20__년__월__일 까지(12개월)

제5조(지도·감독)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학과를 운영하여야 하며, “참여학생”이 원활히 학과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6조(학위과정지원) “참여기업 대표”는 “참여학생”이 학위과정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도중에 퇴직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주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고지의무) 참여학생은 퇴직 등 참여기업에서의 근무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 없이 주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주관대학은 참여학생을 입학취소 할 수 있다.

제8조(등록금 반환) “참여학생”은 자퇴, 제적, 퇴사 등으로 운영지침 제20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주관대학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교육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상호협력)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및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가. 산업교육 추진 및 산학협력 촉진
- 나.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추진 및 참여
- 다.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
- 라. 학생의 현장실습 추진
- 마. 교육용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 활용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
- 바.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 사.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 아. 기타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관련 사항

제10조(비밀유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산업안전 계약학과」 사업 참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는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이 각 1부씩 보관하고,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참여학생"의 의무근무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효하다.

20 년 월 일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관대학의 장”	협성대학교	총 장	서 명 수 (서 명)
“참여기업 대표”	○ ○ ○ (주)	대 표	○ ○ ○ (서 명)
“참여학생”	○ ○ ○ (주)	근로자	○ ○ ○ (서 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학교는 산업안전 계약학과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산업안전 계약학과” 사업과 관련한 학생선발 및 재학생 관리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무실 전화, 직위, 휴대전화, 근무부서, 재직기간

보유·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3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 시 본 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재)화성산업진흥원(Tel. 031-278-6465)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주관대학 운영점검, 성과평가 및 참여학생 만족도조사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성명,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성적, 출석, 졸업여부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제공일로부터 3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 시 본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IV. 산업안전보건 계약학과 기타 안내 사항

참여학생의 근무 및 학업상황 변동에 따른 처리기준

구분	내용	1) 입학취소 또는 제적	2) 학위 취소	3) 교육 지원금 환수	4) 교육 지원금 지지
부적격 입학	① 부정 또는 허위로 신청하여 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	X
퇴 직	②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기간 내에 폐업,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참여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참여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X	X	X	X
	③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기간 내에 임금체불, 계속되는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기업에서 자진 퇴사한 경우 * 참여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X	X	X	X
	④ 재학 중 참여기업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의 원에 의해 퇴직한 경우	○	-	○	X
	⑤ 졸업 후 최소의무 기간 내에 참여기업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의 원에 의해 퇴직한 경우	X	X	○	-
	⑥ 재학 중 본인 귀책에 의한 징계해고 등으로 퇴직한 경우	○	-	○	X
	⑦ 졸업 후 최소의무 기간 내에 본인 귀책에 의한 징계해고 등으로 퇴직한 경우	X	X	○	-
	⑧ 학위과정 도중에 본인의 원에 의해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	○	X
자 퇴	⑨ 학위과정 도중에 질병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②,③사유포함)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X	X	X	X
학업태도	⑩ 정당한 사유 없이 학과수업에 무단 불참하거나 성적 불량 등 매우 불성실한 학업태도를 보이는 경우	○	-	○	X
	⑪ 휴학 중인 자가 정해진 기한 내 복학하지 않은 경우	○	-	○	X
	⑫ 참여기업 또는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	○	X
자격요건변동	⑬ 재학 중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된 경우	X	-	X	X
	⑭ 재학 중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대기업이 된 경우	X	-	X	X
	⑮ 재학 중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견기업이 된 경우	X	-	X	○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주관대학과 관리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위 처리기준 중 ①의 경우, 부적격 입학자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해야 함

ⓑ 위 처리기준 중 ②·③ 재학생의 경우,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 미만을 취득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의 학생신분 유지의 경우, 타 기업에 취업하여 3자 계약을 체결하면, 체결 후 시작되는 학기부터 교육지원금 지원 가능

- 1) 입학취소 : 입학이 취소되며, 향후 계약학과에 재입학 불가
- 2) 학위취소 : 입학생이 졸업 시에 취득한 학위를 취소
- 3) 교육지원금환수 : 현재까지 지원된 등록금에 대한 교육지원금 전액 환수
- 4) 교육지원금지원 : 위 ①~⑬ 상황발생 후에 등록금에 대한 교육지원금 지원여부